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85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진성준·김태년·안도걸

김주영 • 박홍근 • 최기상

임광현 · 정태호 · 한정애

신영대 · 추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약 580만 명이 연간 1,281억 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가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영세 납세자의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건당 금액을 법률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와 지속적인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제104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의 제목 중 "전자신고"를 "납세협력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 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납세자의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만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협력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8(<u>전자신고</u> 등에 대한	제104조의8(납세협력비용 등에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대한 세액공제) ①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	
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	
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u>	<u>2</u> 만원(「소득
<u>하는 금액</u> 을 공제한다. 이 경우	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	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납세자의 경우에는 3만
	<u>원</u>)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2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u>대통</u>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 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 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 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 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 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u>l만원</u>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는 2만원)
③ ~ ⑥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